

골드만삭스 글로벌리츠 부동산 종류형 투자신탁[재간접형] 신탁계약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골드만삭스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신탁업자”라 한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제3조 제1항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4.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법 제229조 제2호에 따라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시행령 제240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을 포함함)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개방형집합투자기구”라 함은 투자자가 원할 때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 “추가형집합투자기구”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

한다.

7.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함은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 “판매회사”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들을 말한다.
9.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함은 이 투자신탁과 관련하여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말한다.
10. “수익권”이라 함은 투자신탁에 대한 이권으로서 이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11.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라 함은 법 제238조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설립한 위원회를 말한다.
12. “투자설명서”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13.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이 집합투자기구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골드만삭스 글로벌리츠 부동산 종류형 투자신탁[재간접형]”이라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2. 운용자산별 종류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3. 개방형 · 폐쇄형 구분 : 개방형집합투자기구
4. 추가형 · 단위형 구분 : 추가형집합투자기구
5. 특수형태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 · 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의결권이 있는 증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③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 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4조의2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의 위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투자일임의 방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의 외화자산에 대한 운용업무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에 위탁하고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위탁을 인수한다.

②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자산 및 이와 비슷한 자산(“외화자산”)에 대하여 투자일임의 방법에 의거, 운용 및 운용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하는 권한을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에 위임한다.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2. 공개매수의 응모
3. 유상증자의 청약

④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투자일임계약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의3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명칭 및 업무위탁의 책임) ① 이 계약 시행일 현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그 소재한 국가에서 외국 금융감독기관의 허가·인

가·등록 등을 받아 위탁받으려는 금융투자업 또는 법 제40조 제1호에 따른 금융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자인 맥쿼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리미티드(Macquarie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로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해외자산운용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투자자문사를 선정, 변경, 해지할 수 있다.
- ③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보수의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협의한 금액으로 한다
- ④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수탁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4조의4 (해외보관대리인)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 1.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
- 2. 제17조 제1항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
-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의 수행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한 때에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 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29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7조(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신탁금의 납입)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신탁업자에게 제6조의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신탁업자에게 추가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 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좌수에 최초 설정 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의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당해 수익증권의 종류가 같다면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

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I 수익증권
3. 종류 W 수익증권
4. 종류 C 수익증권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를 한 때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작성 및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수익증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에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일정한 기간 또는 기준일을 정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 연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경우에만 기준일의 실질수익자에 관한 위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 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2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15조(선관의무, 충실의무, 자산운용지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4. 법 제251조 제4항에 따른 대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증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 가.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
 - 바. 증권금융회사
 - 사. 종합금융회사
 -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8.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9.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16조(투자목적) ① 이 투자신탁은 외국법령에 의해 전세계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외국 집합투자증권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주로 호주, 미국의 REITs, 기타 지역의 REITs 및 부동산개발회사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며, 금융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있다. 수익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등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투자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그 수익은 국내 및 국외의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외국법령에 의해 전세계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외국 집합투자증권등(제17조에서 정의됨)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한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나 방침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부동산과 관련된,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이하 “외국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인정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 및 12개월 이내에 상장 예정된 증권에 한한다.

2. 부동산과 관련된,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으로서 주권(해외주식예탁증서 포함),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이하 “외국지분증권”이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인정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 및 12개월이내에 상장 예정된 증권에 한한다.
3. 법 제4조 제3항의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 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무증권”이라 한다)
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5.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증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 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어음”이라 한다)
6.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 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등 법 제9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통화와 관련된 장내파생상품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다만 통화 관련 장내파생상품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헛지 목적의 거래에 한한다.
7.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 중,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헛지 목적의 거래 및 금리스왑거래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고 한다).
8.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9.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10. 증권의 차입
11. 단기대출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말한다)
12. 양도성예금증서
13.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14.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외국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으로 한다.
2. 외국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한다.
3. 채무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4.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5.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 6.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로 한다.**
- 6. 장외파생상품 중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이 산출근거가 되는 채무증권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무증권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을 포함한다. 이하 동 항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지분증권

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특정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이하 “부동산개발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 부동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발행된 유동화증권(이하 “유동화증권”이라 한다)으로서 그 기초자산의 합계액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한다) 가액의 70% 이상인 유동화증권, 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제15조 제1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 부동산 또는 다른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부동산투자목적회사와 그 종속회사(「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부동산 또는 법 시행령 제240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자산을 합한 금액이 90% 이상인 회사(이하 “부동산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 증권”이라 한다) 및 제15조 제1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 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제15조 제1항 제5호 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제15조 제1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

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제15조 제1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 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2.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부동산개발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또는 부동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에 그 지분증권 총수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부동산개발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또는 부동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에 그 지분증권 총수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4.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 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동 항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 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함)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만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함), 또는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함)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함)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2.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단, 위 1호 각목 및 아래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위 1호 가목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3.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5.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6.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범위에서 50%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하는 행위
2.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범위에서 50%를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행위
3.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범위에서 20%를 초과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행위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법 제191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또는 법 제191조에 따른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으로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2.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4. 그 밖에 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하는 거래

⑨ 집합투자업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각 호에 따른 취득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한도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취득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 등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그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취득 없이 위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2항 제1호, 제2호는 투자신

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1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에 한한다)
2.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 ③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 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 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⑥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

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5.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한 별도의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9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판매를 다

시 시작할 수 있다.

제25조(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금전등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한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 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4항을 준용한다)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 영업 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당일 포함)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한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4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③ 수익증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된다.

1. 종류 A 수익증권의 수익자 : 제한없음
2. 종류 I 수익증권의 수익자 : 납입금액 10억이상의 투자자에 한함
3. 종류 W 수익증권의 수익자 : 증권회사의 일임형 Wrap,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4. 종류 C 수익증권의 수익자 : 제한없음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촉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도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현물보유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장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교부한다.
- ⑥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을 포함한다)부터 제10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11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내외의 공휴일 등 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환매대금 지급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그 지급이 가능하게 되는 즉시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판매회사(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 ⑧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가 위 제6항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서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⑨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수익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익증권의 원활한 환매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54조 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⑩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27조(환매가격)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 (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일 포함)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토요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의한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닌 날로써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 2 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28조(환매연기 등)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

- 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자체 없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나.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57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라.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57조 제3항에서 정한 사항
 - ④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제29조 (환매 연기기간 동안 매수 및 환매신청의 처리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매회사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2. 제35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판매회사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8조에 따른 환매연기 이후 환매 연기 기간 동안 수령한 수익증권의 매수 및 환매신청은 환매 연기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익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8조에 따른 환매 연기 기간 동안에는 제3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이 투자신탁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의 산정 중단에 관하여 공시하고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대한 매수 및 환매를 신청한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준가격의 산정 중단이 해소되는 때에 매수 및 환매의 재개를 할 수 있다.

제30조 (일부환매)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28조 제1항에 따른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일부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237조 제7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위 제1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제33조에 따라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위 제1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관련 내용을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1조 (환매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2. 수익자 또는 그 수익자의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2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3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5장 집합투자재산평가 및 회계

제32조(집합투자재산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기준가격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그 공고·계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제32조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계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한다.

③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계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제34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35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투자신탁의 외부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③ 동 조항은 법 시행령 제2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제37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다.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제반 조세, 비용 및 경비를 공

제한 후,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회사는 해당 모든 조세 및 환매수수료를 공제한 이후 신탁업자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6장 수익자총회

제40조(수익자총회) 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또한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만으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수익자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상의 수익자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보낸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위 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

의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⑩ 제4항, 제6항, 제8항, 제9항은 제3항에 의한 수익자총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⑪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한다.

⑫ 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법상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해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한다. 다만, 매수 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수 및 수수료등

제42조(보수)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단 부채중 투자신탁보수관련 금액은 전일까지 계상된 금액으로 확정하여 산출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매일 산출하여 계상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
-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0.90%
-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4%

2. 종류 I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

-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0.70%
-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4%

3. 종류 W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
-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0.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4%

4. 종류 C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
-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90%
-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4% (신설 2006.11.30)

④ 위 판매회사보수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한다.

제43조(판매수수료) ① 판매회사는 종류 A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② 판매회사는 종류 I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후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수익권좌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종류 W, C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4조(환매수수료) 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 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 별로 환매를 청구하는 해당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 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여기서 “이익금”이란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과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된 기준가격의 차에 환매하는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환매하는 수익증권 좌수에 대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된 이익분배금은 합산하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한다.

1. 종류 C 수익증권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제45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및 투자신탁과 관련한 납세신고서 작성 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 및 자문 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수익자에 대한 통지 및 공고비용

10. 제4조의4에 의한 해외보관대리인 비용. 단,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 보관 및 예탁수수료는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해외보관대리인간에 합의된 기일과 방법으로 지급한다
11.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제8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46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40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47조 제2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47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2. 법 제184조 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420조 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③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2. 법 제420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48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5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미수금, 미지급금의 처리)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48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규정 제7-11조 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48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챈무가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규정 제7-11조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챈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챈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 제50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합병가액은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날의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합병계획서에 관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집합투자업자는 제19조 제4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소각
-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를 통한 매도

제52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헤럴드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서울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 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총리령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개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3조(손해배상책임)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가 위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54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5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6조(관할법원)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2009년 4월 []일

집합투자업자 :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226번지

흥국생명빌딩 19층

신탁업자 :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서울 중구 청계천로 24 (다동 39)

대표이사 이지형 (인)

은행장 하영구 (인)